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2. 11.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 26.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2. 1. 27.

다. 상정일자: 2022. 2. 10.

(제26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성동구청장

나.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의견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규정 신설(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1) 의견제출 제외 대상 및 의견제출 방법 규정

2) 의견제출 검토 규정: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 30일 이내 결과 통보

나.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 나. 협조부서: 기획예산과
- 다. 예산조치: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행 시 관련 예산 편성
- 라. 입법예고: 2021. 12. 23. ~ 2022. 1. 12.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가. 제안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의 의견제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4조에서는 입법예고 생략 가능한 대상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정비하여 신속한 구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21조에서는 주민의 규칙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구청장은 구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종중하여 처리하며 구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규정함

-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구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의 방법과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에 대해 명시함
- 안 제24조와 제25조에서는 구청장이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하게 한 후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문서로 통보도록 하였으며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였음
- 안 제26조와 제27조에서는 구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 대우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되며 이와 관련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음
- 규칙이 법령·조례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나, 규칙 제정·개정·폐지 과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불가한 문제가 있었으나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주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상으로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며, 내부 행정업무 관련 사항은 단체장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으므로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됨

다. 종합 검토의견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목적규정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하고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권리가

신설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자치법규 입법에 대한 구민 참여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며,

- 자치법규 입법 시 특히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소식지 등 안내를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봄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